

제305회 정례회
2011. 12. 19(월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나시찬

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권기수 의원 외 6명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1년 12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2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·시행('09. 2. 6, '09. 8. 11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노후·불량 건축물의 기준 (안 제3조)
- 나.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 (안 제4조)
- 다.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(안 제7조)
- 라.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 (안 제20조)
- 마.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정비기금 적립 (안 제32조)
- 바.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(안 제33조)
- 사.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(안 제34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고,

- 노후·불량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, 도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의 개정·시행에 따라 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,
- 업무주관 부서인 균형건설국 도로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, 입법예고(2011.11.10 ~ 11.29)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이행하였음.
-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, 본 조례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- 조문의 내용은 「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

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간결하게 발의되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